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3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57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0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01.23.), 제2020-152호(2020.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0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2021.0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07.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08호(2021.11.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39호(2022.0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0호(2022.0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15호(2022.07.21.)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604.2	-	505,604.2	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 2027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도심 의존적 도시구조를 탈피하여 중랑 생활권 및 동북1권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충족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중심에 걸맞는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라.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 19,889인 / 7,803세대
 - 구역별 수용계획 (변경없음)
-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촉진지구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공공 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민간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 5) 교통계획 (도서참조)
- 6) 경관계획 (변경없음)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변경없음)
 - 구역별 계획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건축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주용도	비 주 거(㎡)						주 거(㎡)			건폐율
		판매	업무	교육 연구	문화· 기타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 촉진 구역	11,815.1 (6.9%)	-	-	6,047.5 (3.5%)	-	17,862.6 (10.4%)	9,572.0 (5.6%)	144,163.3 (84.0%)	153,735.3 (89.6%)	60%
	상봉8 재정비 촉진 구역	101,147.7 (43.4%)	8,264.1 (3.6%)	13,618.5 (5.8%)	2,998.5 (1.3%)	-	126,028.8 (54.1%)	-	106,914.1 (45.9%)	106,914.1 (45.9%)	60%
	상봉9 재정비 촉진 구역	29,170.8 (9.6%)	-	-	507.7 (0.2%)	948.2 (0.3%)	30,626.7 (10.1%)	63,237.7 (20.9%)	208,567.6 (69.0%)	271,805.3 (89.9%)	60%

- 변경

구 분	주용도	비 주 거(㎡)						주 거(㎡)			건폐율
		판매	업무	교육 연구	문화· 기타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 촉진 구역	11,815.1 (6.9%)	-	-	6,047.5 (3.5%)	-	17,862.6 (10.4%)	9,572.0 (5.6%)	144,163.3 (84.0%)	153,735.3 (89.6%)	60%
	상봉8 재정비 촉진 구역	101,147.7 (43.4%)	8,264.1 (3.6%)	13,618.5 (5.8%)	2,998.5 (1.3%)	-	126,028.8 (54.1%)	-	106,914.1 (45.9%)	106,914.1 (45.9%)	60%
	상봉9 재정비 촉진 구역	25,834.9 (8.9%)	-	-	2,985.4 (1.0%)	624.2 (0.2%)	29,444.5 (10.1%)	60,847.1 (20.9%)	201,394.7 (69.0%)	262,241.8 (89.9%)	60%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상봉9 재정비 촉진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비주거시설 연면적(비율)의 변경 - 문화시설 : 507.7㎡(0.2%) → 2,985.4㎡(1.0%) - 판매시설 : 25,170.8㎡(9.6%) → 25,834.9㎡(8.9%) - 근린생활시설 : 948.2㎡(0.3%) → 624.2㎡(0.2%)	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시설 확보를 위한 비주거시 설 연면적(비율) 변경

1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나)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 사업완료

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1	25~28	보조 간선	(380) [195]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 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로
변경	대로	3	51	25~31	보조 간선	(380) [195]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 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로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255 [130]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312호 (2009.8.13.)	요람2길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732 [235]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425호 (19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대로 3-51	대로3-51	폭원 변경 (B=25~28m → 25~31m)	대로3-51호의 도시계획시설 폭원 정정

○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도시 계획 시설	①	공공청사	상봉동 83-5일대	1,569.0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중복결정

○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도시 계획 시설	①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상봉동 83-5일대	1,569.0	서울시 고시 제282호 (1981.7.27.)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대지면적(m ²)	위치	연면적(m ²) (토지환산면적)	채납행정청(관리청)
1	자동차정류장	1,569.0	상봉동 83-5일대	4,830.9 (855.8)	서울특별시청
2	공공청사	-	상봉동 83-5일대	2,891.8 (657.0)	종량구청

※ 자동차정류장(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에 운영 및 관리함

※ 공공청사(시설)은 종량구로 귀속되며 종량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및 공유지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산정기준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역을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0.11)

- 단,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단가로 적용

－ 이하 여백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정

결구 정본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 정	상봉 9 재정비촉진지구	28,526.6	획지1	22,698.5	상봉동 83-1 일대	302,432.14	판매, 업무, 근생, 주거, 문화	600이하	738이하	175m (52층)
			여객자동차터 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상봉동 83-5 일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산부지면적 3.0%(855.8㎡) 해당 건축물 제공		
						공공청사		환산부지 2.3%(657㎡) 해당 건축물 제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 254세대 / (25.43%) － 전용면적 60㎡~85㎡이하 : 314세대 / (31.43%) － 전용면적 85㎡초과 : 431세대 / (43.14%) ○ 건립예정 세대수 : 999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상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6m ○ 벽면한계선(저층부)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 벽면한계선(고층부)는 지상6층이상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10m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대상지 서측~동측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1) ○ 대상지 북측~공공보행통로-1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2) ○ 구역계 북동측 1개소, 남서측 1개소 공개공지로 지정							

※ 환산부지면적 산정기준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20.10.11. 서울시 도시계획국)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조건사항(2021.04.06.)

- 임대주택은 중형평형(84㎡)을 추가 확보하고 소형평형(60㎡이하) 임대는 분양 세대수와 동일하게 계획하여 소설믹스를 검토할 것
- 대상지 서측 및 남측 도로는 보행 공간이 대지 내 공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공 보행에 장애가 없도록 지역권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음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주거용 건축물 평면은 코어가 비대하여 불필요한 공간이 많으며, 채광 및 환기에도 불리하므로 개선된 평면을 설계하여 제시할 것
 - 건축물 포디움 높이(2층)는 건축물의 비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확보하되, 주거를 포디움 상부에 연도형 형태로 배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 저층부 판매시설 위치 및 접근 동선은 내부 접근성 위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가로 활성화 및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상지 서측 건축물 배치는 가로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층부 벽면한계선 등을 통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이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변 경	상봉 9 재정비촉진지구	28,526.6	획지1	22,698.5	상봉동 83-1 일대	291,686.3	판매, 업무, 근생, 주거, 문화	60이하	738이하	175m (52층)
			여객자동차터 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상봉동 83-5 일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산부지면적 3.0%(855.8㎡) 해당 건축물 제공		
						공공청사		환산부지 2.3%(657㎡) 해당 건축물 제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 254세대 / (25.43%) - 전용면적 60㎡~85㎡이하 : 314세대 / (31.43%) - 전용면적 85㎡초과 : 431세대 / (43.14%) ○ 건립예정 세대수 : 999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상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6m ○ 벽면한계선(저층부)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 벽면한계선(고층부)는 지상6층이상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10m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대상지 서측~동측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1) ○ 대상지 북측~공공보행통로-1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2) ○ 구역계 북동측 1개소, 남서측 1개소 공개공지로 지정							

※ 환산부지면적 산정기준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020.10.11. 서울시 도시계획국)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조건사항(2021.04.06.)

- 임대주택은 중형평형(84㎡)을 추가 확보하고 소형평형(60㎡이하) 임대는 분양 세대수와 동일하게 계획하여 소설믹스를 검토할 것
- 대상지 서측 및 남측 도로는 보행 공간이 대지 내 공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공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권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음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주거동 건축물 평면은 코어가 비대하여 불필요한 공간이 많으며, 채광 및 환기에도 불리하므로 개선된 평면을 설계하여 제시할 것
 - 건축물 포디움 높이(2층)는 건축물의 비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확보하되, 주거를 포디움 상부에 연도형 형태로 배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 저층부 판매시설 위치 및 접근 동선은 내부 접근성 위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가로 활성화 및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상지 서측 건축물 배치의 가로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층부 벽면한계선 등을 통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이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건축연면적(㎡)의 변경 - (기정) 302,432.14㎡ → (변경) 291,686.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재정비촉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아) 건축물 용도별 비율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비 주 거				주 거			비 고
		판 매	문 화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계	
기정	비율(%)	9.6	0.2	0.3	10.1	20.9	69.0	89.9	
변경	비율(%)	8.9	1.0	0.2	10.1	20.9	69.0	89.9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비주거시설 연면적(비율)의 변경 - 문화시설 : 0.2% → 1.0% - 판매시설 : 9.6% → 8.9% - 근린생활시설 : 0.3% → 0.2%	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시설 확보를 위한 비주거시설 연면적(비율) 변경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기정	상봉 9 재정비촉진구역	22,698.5	-	30,255.48	197	85㎡미만	
변경	상봉 9 재정비촉진구역	22,698.5	-	29,173.97	197	85㎡미만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연면적(㎡)의 변경 - (기정) 30,255.48㎡ → (변경) 29,173.97㎡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연면적)의 변경

16) 존치구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17) 기타(광고물 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정보화 계획, 방재 계획, 에너지 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 친화적 촉진구역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5	35~41	간선도로	8,100 (1,210)	중랑교	망우동 서울시계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망우로
기정	대로	2	88	25~32	-	2,020	망우동 489-2	신내동 674-1	-	서울시고시 제104호 (1994.4.7)	신내길
기정	대로	3	-	25~30	보조간선	(380)	(상봉동 160-7)	(상봉동 160-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935호 (1964.6.25)	면목동길
기정	대로	3	-	25	보조간선	(675)	(상봉동 160-18)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봉우재길
기정	대로	3	51	25~28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변경	대로	3	51	25~31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기정	중로	1	185	20~26	-	620	상봉동 99	상봉동 301	-	서울시고시 제949호 (1988.12.12)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1	-	20	집산도로	732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25호 (19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255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요람2길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0	상봉동 92-5	상봉동 8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4호 (2000.8.4)	상봉여울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40	상봉동 99-1	상봉동 184-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203	망우동 565	망우동 495-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맞춤새길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9	상봉2동 501	상봉2동 399-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5호 (2000.8.16)	-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207	상봉동 88-93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74호 (2017.5.25)	-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292	망우동 534-37	망우동 534-6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새한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9	망우동 534-62	망우동 534-5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맞춤새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70	상봉동 184-2	상봉동 500-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1	상봉동 500-4	상봉동 72-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소로	2	-	8	집산도로	41	망우동 534-65	망우동 564-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3~6	국지도로	27	상봉동 395-4	상봉동 101-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	4	특수도로	53	상봉동 106-3	상봉동 91-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
기정	소로	3	-	3~4	특수도로	28	상봉동 395-4	상봉동 395-4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	3~6	국지도로	27	상봉동 395-4	상봉동 101-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	3~4	국지도로	77	상봉동 395-4	상봉동 395-4	일반도로	-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대로 3-51	대로3-51	폭원 변경 (B=25~28m → 25~31m)	대로3-51호의 도시계획시설 폭원 정정

- (2)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 (3) 광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 (4) 도시철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 (5) 철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 (6)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 (7)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없음)
- (8)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조서 (변경없음)
- (9) 입체적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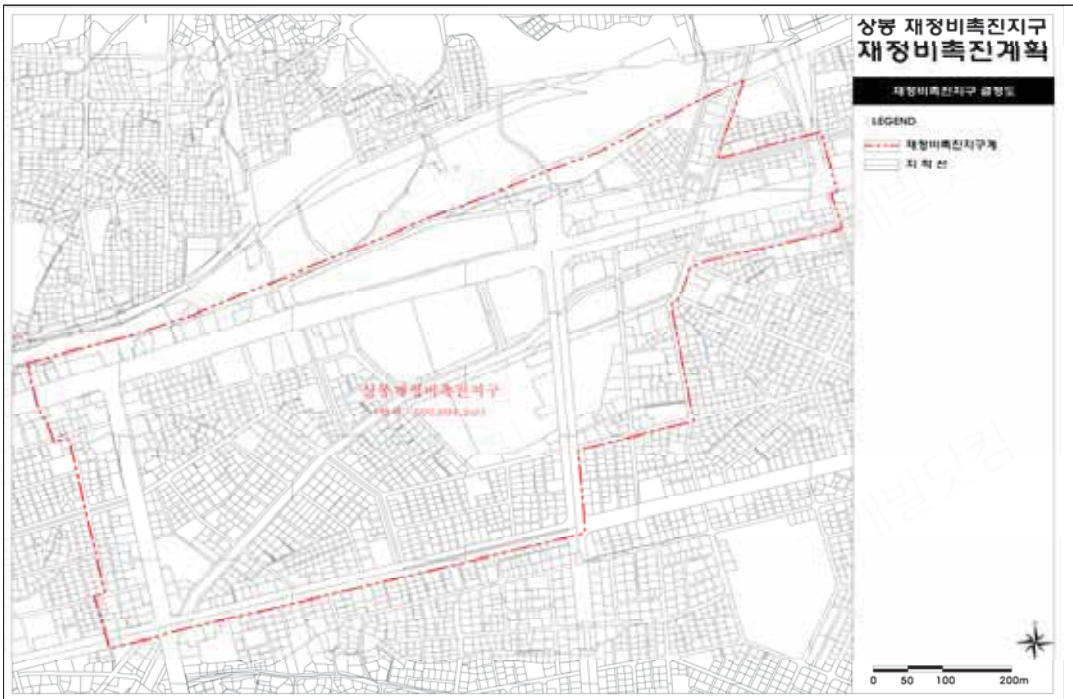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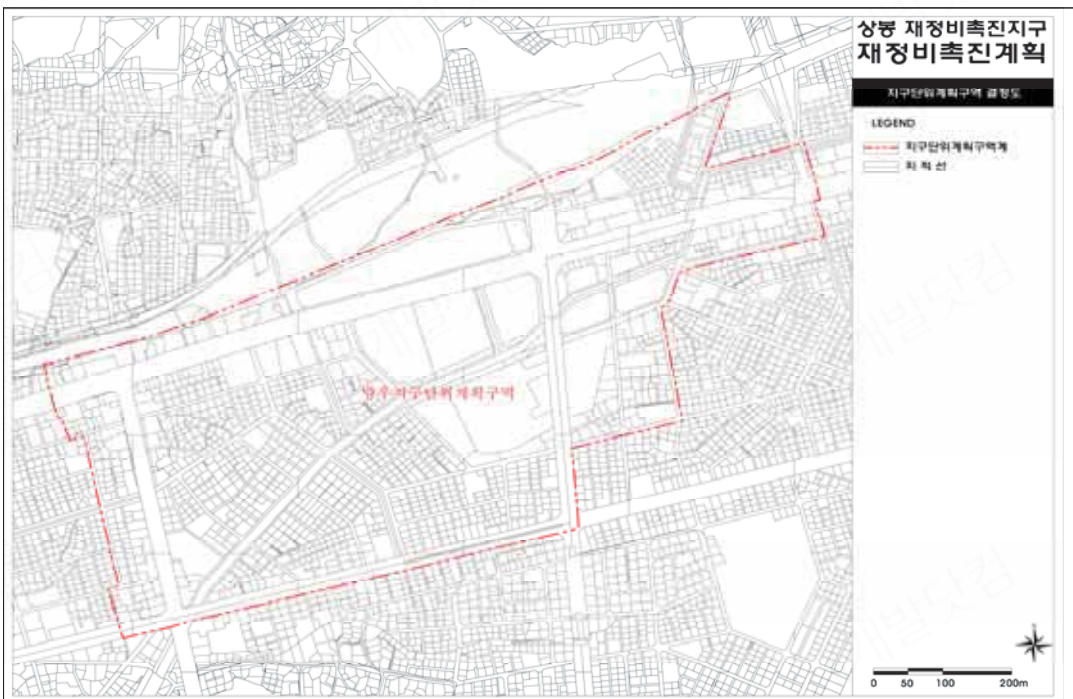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7) 및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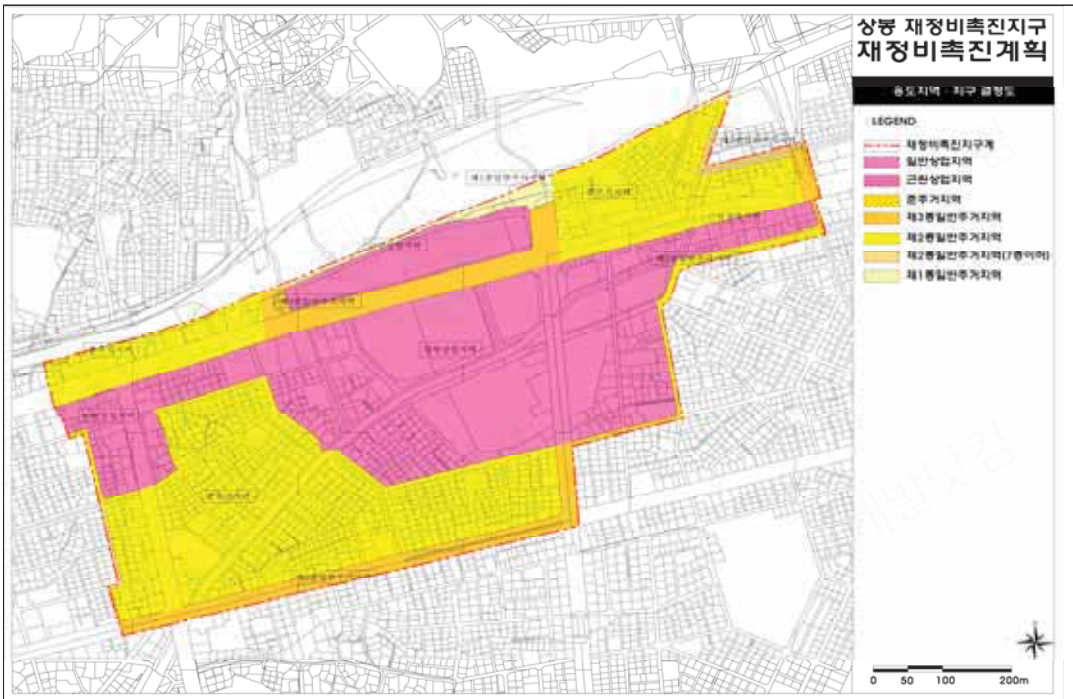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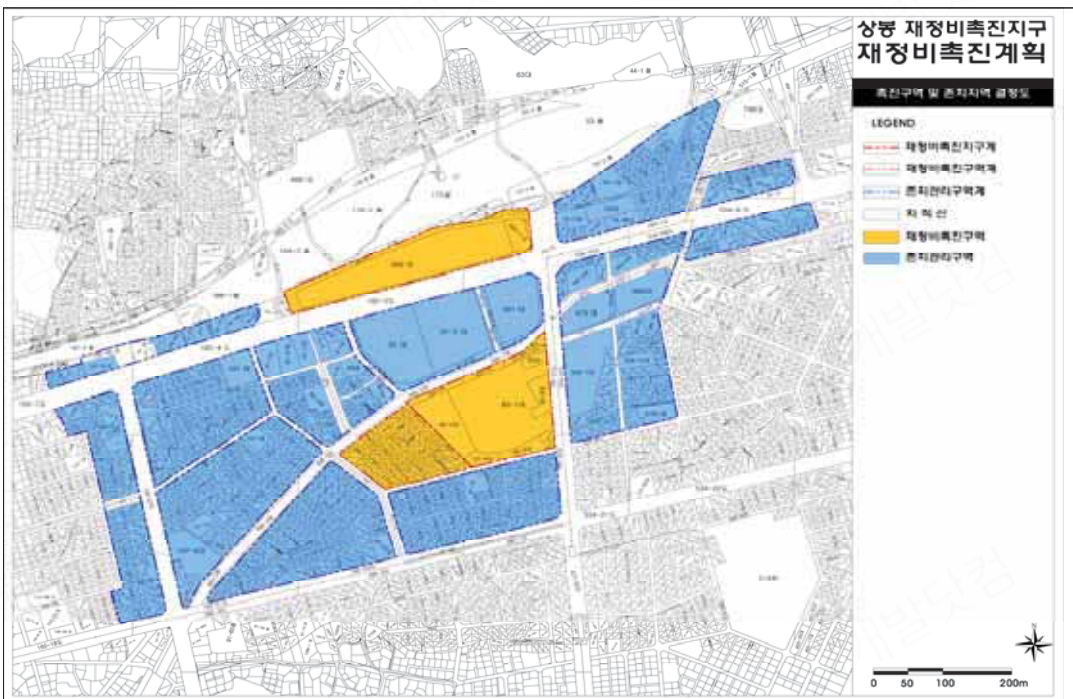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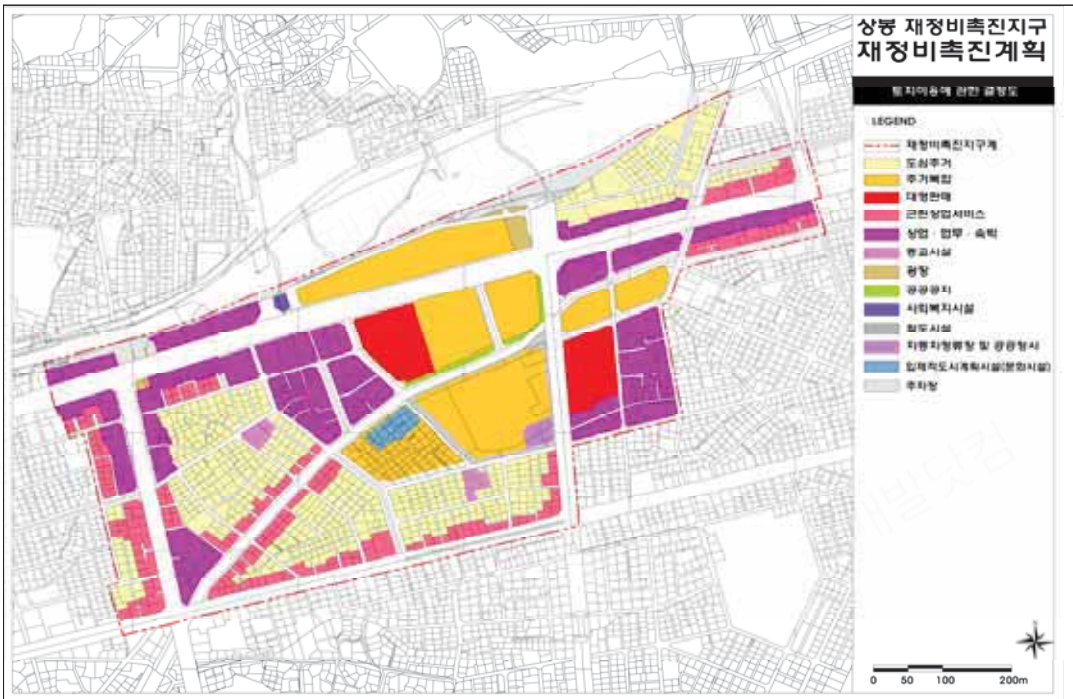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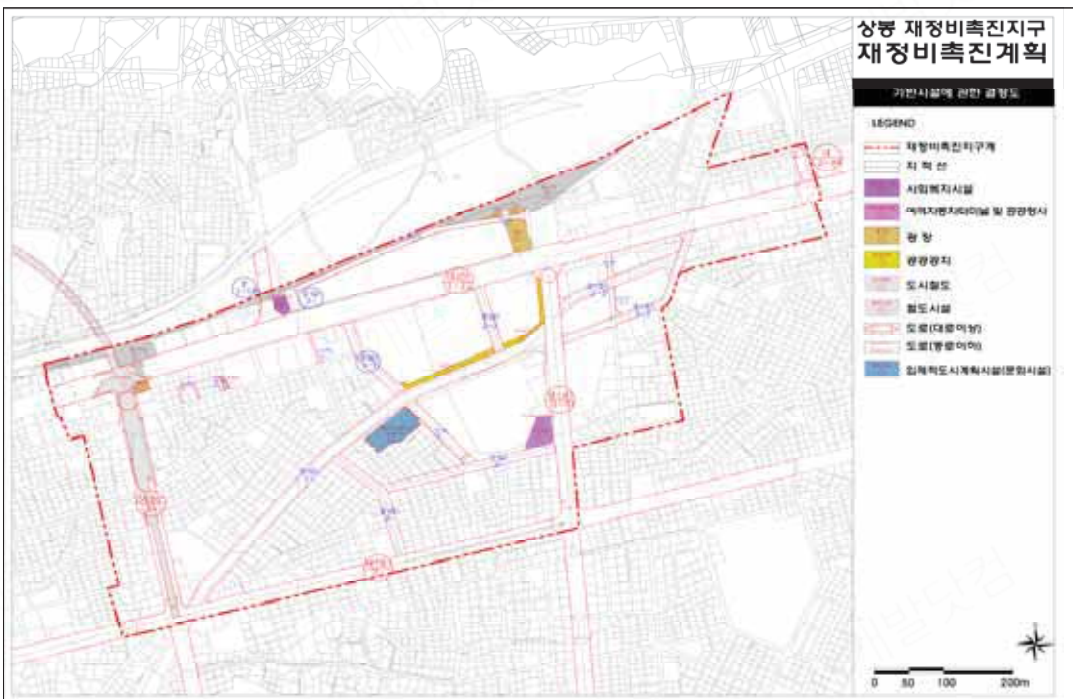
○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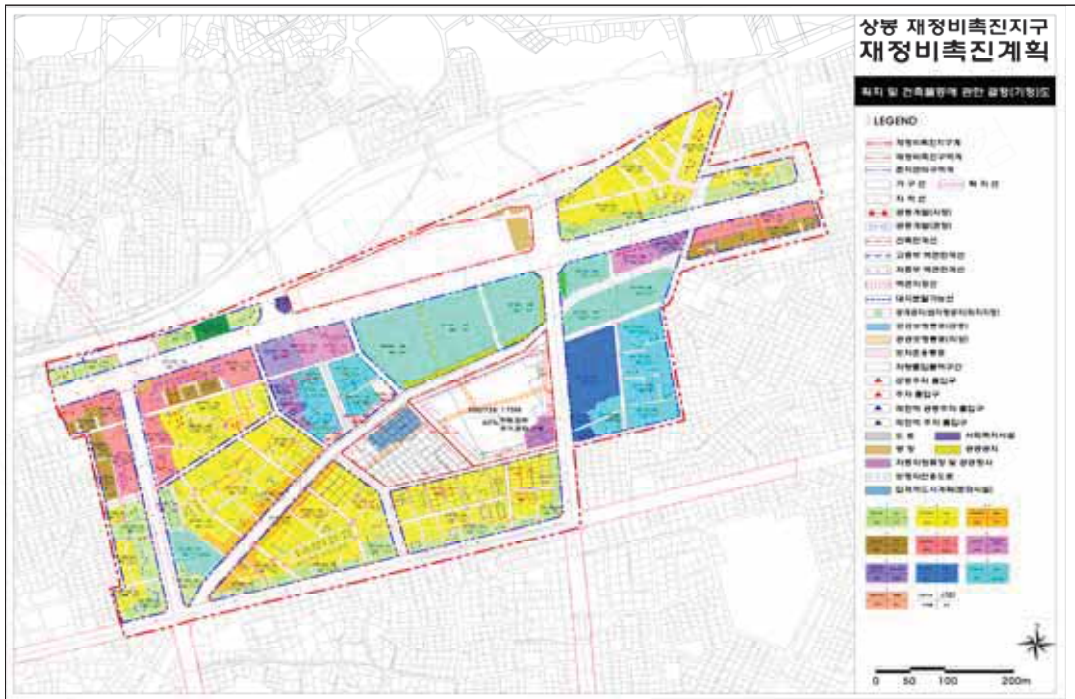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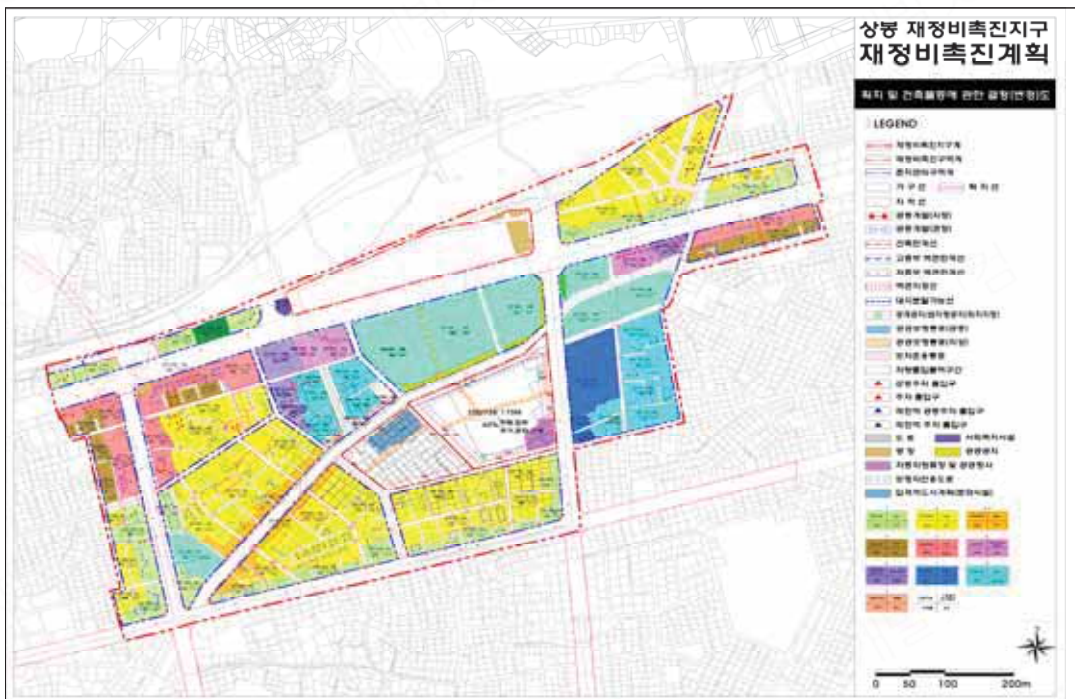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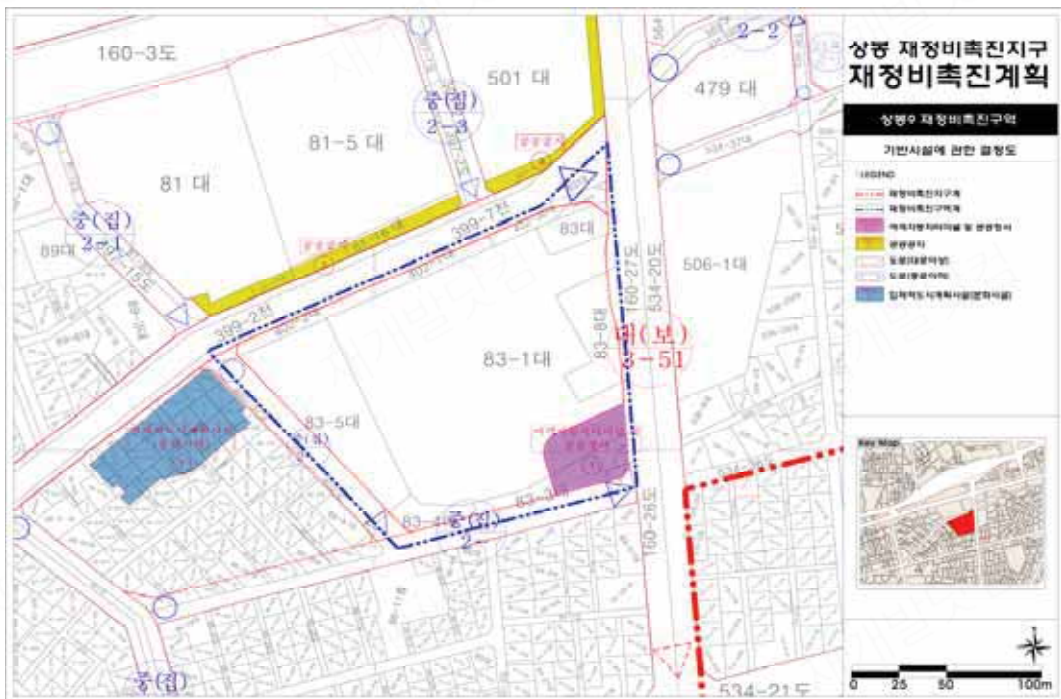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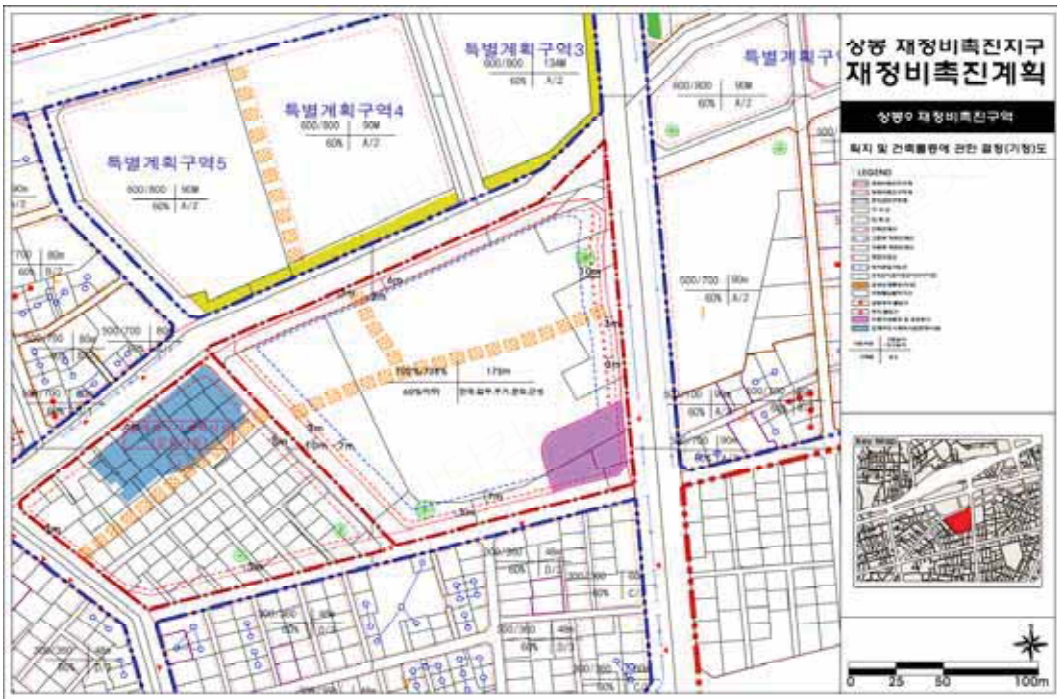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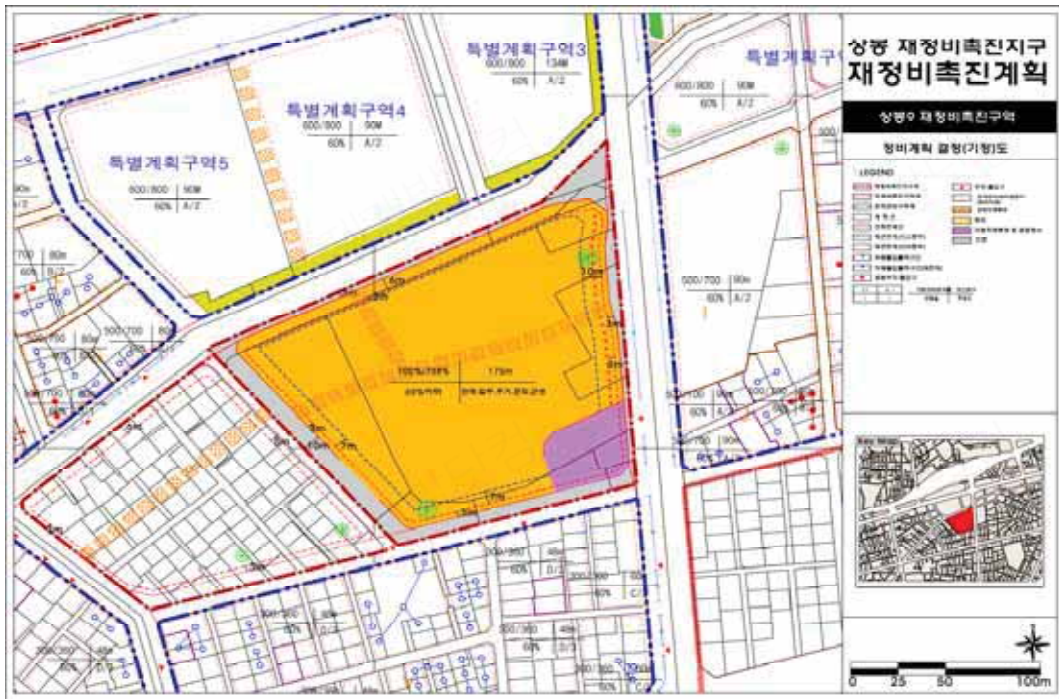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 (기정)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 (변경)

